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1년 우리 순창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983	1,265	1,287	1,360	94.66

-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1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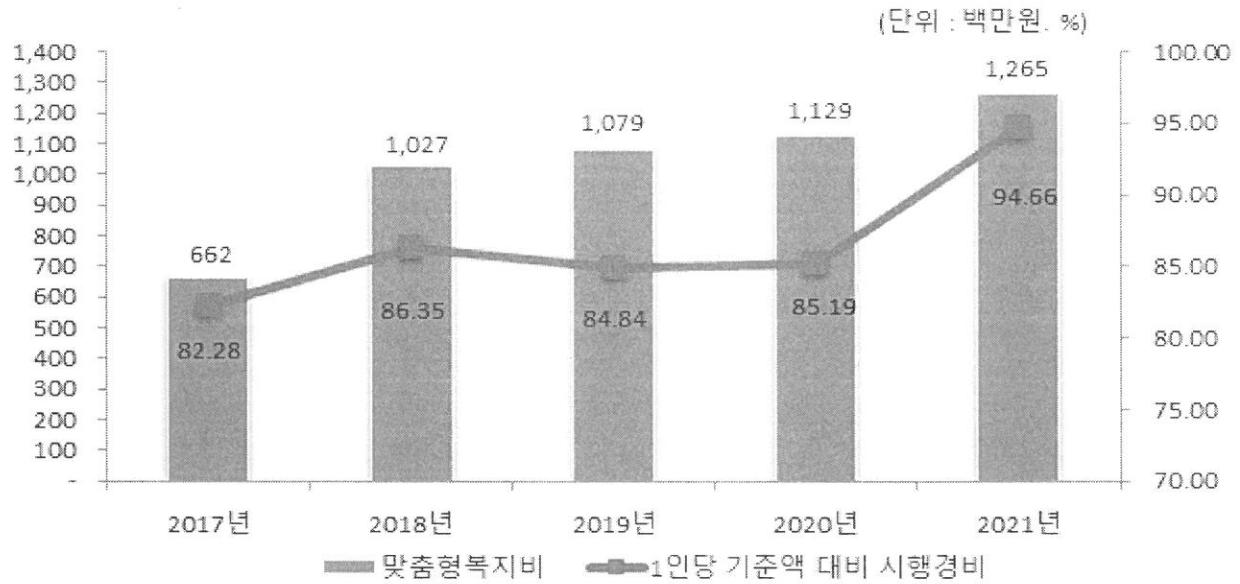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대상인원 (A)(명)	834	922	963	954	983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백만원)	662	1,027	1,079	1,129	1,265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965	1,290	1,320	1,330	1,36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794	1,114	1,120	1,133	1,287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82.28	86.35	84.84	85.19	94.66

※ '21 회계연도부터 맞춤형복지제도 대상 회계에 기타특별회계 추가('20회계연도까지 일반회계 대상 산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신규공무원 채용에 따른 대상 인원증가 및 1인당 기준액 상승으로 시행경비 증가